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8 선고 2024가단50991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윤용, 박종훈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7. 11.

판 결 선 고 2024. 8. 8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20,576,263원 및 그 중 20,353,368원에 대하여 2023. 10. 6.부터 2024. 3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3. 1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은 20,576,263원 및 그 중 20,353,368원에 대하여 2023. 10. 6.부터 2024. 3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2024. 6. 20.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.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정윤주

별지